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36

발의연월일: 2025. 5. 16.

발 의 자:김장겸・박덕흠・주호영

서일준 · 서천호 · 박준태

조지연 • 박충권 • 최형두

이양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·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.

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, '25.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.47%포인트,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.52%포인트로,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.

이에 금융감독원의 「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」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,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,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

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율(이하 이 조에서 "예금금리"라한다)과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(이하 이 조에서 "대출금리"라한다) 및 그 차이(이하 이 조에서 "예대금리차"라한다)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개월마다 공시하여야한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 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예대금리차 산정 방법 및 공시 방법・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	제30조(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
등에 관한 준수 사항) ①・②	등에 관한 준수 사항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은행은 각종 예금에 대한
	이자율(이하 이 조에서 "예금
	금리"라 한다)과 각종 대출 등
	여신업무에 대한 이자율(이하
	이 조에서 "대출금리"라 한다)
	및 그 차이(이하 이 조에서
	"예대금리차"라 한다)를 인터넷
	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확인
	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개월마
	다 공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
	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예금
	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
	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
	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
	<u>고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제3항에 따른 예대금리차
	<u>산정 방법 및 공시 방법·절차</u>
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